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
일부개정법률안

(이개호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680
----------	-------

발의연월일 : 2025. 12. 29.

발의자 : 이개호 · 임오경 · 박수현

민형배 · 어기구 · 소병훈

위성곤 · 김정호 · 전진숙

채현일 · 이강일 · 조계원

최혁진 · 문금주 의원

(14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지역균형발전시책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를 설치하고, 해당 특별회계는 지역자율계정과 지역지원계정으로 구분됨.

그런데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의료취약지역 내 응급의료체계, 지역의 의료기관 구축 사업 등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임에도 해당 특별회계의 세출 사업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수도권과 지역 간 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있음.

이에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 · 융자 · 출자 예산을 계상하는 지역지원계정 세출 항목에 보건의료 확충에 관한 사업을 명시하여 지역 주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자 함(안 제79조제2항제16호

\equiv_{\circ}).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
일부개정법률안

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79조제2항제16호를 제17호로 하고, 같은 항에 제1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“제7호까지 및 제16호에”를 “제7호까지, 제16호 및 제17호에”로 한다.

16. 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체계 구축 및 지역의 의료인력 · 의료기관의 육성 · 확충 · 정비 사업 등에 대한 출연 · 보조 또는 융자 제80조제2항제1호나목 중 “제10호 및 제16호에”를 “제10호, 제16호 및 제17호에”로 한다.

제93조제1항 중 “제16호에”를 “제16호, 제17호에”로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79조(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(생 략) ② 회계의 지역지원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~ 15. (생 략) <u><신 설></u> <u>16. (생 략)</u> ③ 제2항제1호부터 <u>제7호까지</u> 및 <u>제16호에</u> 따른 용자의 대상 · 조건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 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 다. ④ (생 략)	제79조(지역지원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~ 15. (현행과 같음) <u>16. 의료 취약지역의 응급의료</u> <u>체계 구축 및 지역의 의료인</u> <u>력 · 의료기관의 육성 · 확충</u> <u>· 정비 사업 등에 대한 출연</u> <u>· 보조 또는 용자</u> <u>17. (현행 제16호와 같음)</u> ③ ----- <u>제7호까지</u> , <u>제16호 및 제17호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④ (현행과 같음)
제80조(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(생 략) ② 회계의 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1.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출연 · 보조 또는 용 자 등	제80조(제주특별자치도계정의 세입과 세출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. 1. ----- ----- ----

가. (생략)	가. (현행과 같음)
나.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, 제9호, <u>제10호 및 제16호에</u> 따른 출연·보조·융자 및 지원 등	나. ----- ----- <u>제10호,</u> <u>제16호 및 제17호에</u> ----- -----
다. (생략)	다. (현행과 같음)
2. ~ 5. (생략)	2. ~ 5. (현행과 같음)
③ (생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93조(회계사무의 위탁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78조제2항제7호, 제79조제2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<u>제16호에</u> 따른 사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「은행법」에 따른 은행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에 위탁할 수 있다.	제93조(회계사무의 위탁) ① ----- ----- ----- <u>제16호, 제17호에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.
② ~ ④ (생략)	② ~ ④ (현행과 같음)